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김재민*

I. 서 론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범죄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형사사법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과 범죄피해자와의 첫 만남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명쾌한 설명을 듣고자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행위의 충격속에 있는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진정시켜줄 외부의 자상한 도움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과 범죄피해자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양자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형사사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경찰의 수사활동이¹⁾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갈등의 간격을 좁히는

* 경찰대학 경찰학과(범죄수사전공) 교수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경찰의 수사활동' 및 '수사경찰'의 '경찰'이라는 용어는 단지 수사 전문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과(형사과) 경찰관만을 의미하지 않고, 초동수사에 관여하는 방법과 소속 파출소 근무자를 비롯하여 사실상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경찰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범인검거라는 수사목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배려하고 그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일이 21세기 형사사법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써 ‘犯罪統制的 觀點(Crime Control)’이나 ‘法執行的 觀點(Law Enforcement)’으로 이해하여 왔던 것이 종래의 대체적인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수사활동은 범인체포 및 증거수집을 통한 성공적 기소와 처벌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초래된 피해의 원상회복을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아님 중의 하나로 보는 오늘날의 ‘回復的 司法(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되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임무에도 충실히 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여러 형태의 손실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경찰의 수사활동이 ‘受動的의 法執行作用’으로서의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차원의 수사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 피해자지원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로서의 법령·제도·조직·예산문제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의 의식이나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형사사법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활동의 행태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법률적·제도적 여건의 구비 여부는 경찰관의 행태변화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論外로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변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써 事前 教育訓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수사경찰의 업무 행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초동수사에 있어서 현장대응 행태·임의수사에 있어서 피해자 조사 및 면접 행태·강제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 행태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 하였는 바 주로 초동수사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밝혀둔다.

II. 범죄피해자 및 행태변화 전략의 개념

1. 범죄피해자의 정의

피해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대체로 범죄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범죄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피해자학의 경우 '피해자화(Victimization)'의 개념을 '하나의 형사사건속의 범죄행위를 통해 한 개인이 해를 입는 것'이라고 규정한다.²⁾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피해자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① 한 개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존재, ② 해를 당하는 사실의 존재, ③ 하나의 범죄행위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³⁾

최근 피해자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피해자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어떤 개인에게 해로운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것이 최초에 범죄행위에 기인했건 아니건 간에 형사사법

2) Champion, D., *The Roxbury dictionary of criminal justice* (LA : Rexbury, 1997.) p. 128.

3)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New Jersey : Prentice Hall, 2002.) pp. 2-3.

기관 및 국가법집행기관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나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을 피해자로 분류하고자 한다(Karmen, 1996).⁴⁾ 피해자학의 새로운 계열에 속하는 이러한 부류의 학자들 중에는 ‘환경 피해자’ 문제와 관련지으면서, 피해자란 ‘어떤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토대로 한 作爲·不作爲로 고통을 겪는 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그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견가능성(reasonably foreseeabl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Williams, 1996).

이러한 피해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여, 피해자학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피해’에 해당 하려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Culpa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Laura J. Moriarty, 2002). 이러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으면 그는 일종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Laura J. Moriarty는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즉, ①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committed intentionally), ② 동상인이 기대하는 행위기준에 못 미친 행위의 결과로 손해를 끼친 행위(committed negligently), ③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서 해를 끼친 행위(committed recklessly), ④ 정황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위(committed knowingly) 등이 그것이다.⁵⁾ 그러나 형사법상 비난가능성이 없어서(책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⁶⁾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한 그로 인

4) 이 같은 입장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자연재해에 의한 것 까지를 피해개념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학의 독자성이 상실되고, 범죄피해의 특유한 속성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김용세 외,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동향”,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2. p. 153)

5) Laura J. Moriarty, Ibid. p. 5.: 생각건대, 위의 ①은 고의범, ③은 과실범, ④는 미필적 고의범 혹은 인식 있는 과실범으로 논할 수 있어 형사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형식적 범죄피해자 개념), ②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문제로 논할 성질로 보여, 본 논문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私見).

6) 예컨대 심신상실자의 방화·형사미성년자의 살인과 같은 경우이다.

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범죄피해자의 부류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실질적 범죄피해자 개념). 또 여기서 말하는 범죄의 개념에는 각 *private*의 형사법상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그 작위·부작위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각국의 형사법령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자신의 행위 결과가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의 행위규범에 실질적으로 위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를 받은 상대방을 범죄피해자라고 한다.’⁷⁾

오늘날 형사사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들을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수사 서비스를 받아야 할 형사절차상의 중요 당사자 중 하나로서, 혹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 공동협력자로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수사경찰들은 범인검거라는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그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관심과 배려의 정신이 모든 수사활동 행태속에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김용세 외, 전계서, p. 155. 참조;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중 경찰의 즉각적 대응이 요청되는 현장성이 강한 범죄의 피해자를 주로 상정하였다.

2. 행태변화 전략의 개념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하에서 경찰 수사활동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신속·공정하게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행할 수 있는 각종 배려와 지원조치 들을 충분히 수행하여 줌으로써 피해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게끔 도와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보호에 충실한 경찰 수사활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① 법률제도적 전략, ② 조직문화적 전략, ③ 행태변화 전략 등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법률제도적 전략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제도화·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도 명문화·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 등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전략이며, 조직문화적 전략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수사경찰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이고, 행태변화 전략은 구체적인 법집행 현장에서 표출되는 경찰관의 업무수행 태도나 행동요령을 피해자 지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사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하는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학을 연구해 온 여러 학자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요청에 응한 자가 경찰이든 가족이든 최초 대응을 어떤 행태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충격과 당혹감은 어느 경우에도 최초의 사건 현장에서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Berglas, 1985).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따뜻한 언행과 자상한 안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 등을 경찰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해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⁸⁾ 현장에서 경찰이 보여주는 대응행태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8)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eds),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9)*, p. 46.

경험을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형태도 달라질 수 있을 만큼 경찰의 최초 대응방법과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의 진행과는 매우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친절한 배려가 사후의 전문가에 의한 상담보다도 훨씬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피해자 보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 경찰의 수사활동 행태를 진단한 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경찰의 행태개선을 통한 이러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 여건의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등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행태변화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세 가지 전략은 상호간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전략만을 가지고 온전한 수사경찰의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III. 범죄피해자의 피해 양상에 대한 이해

수사를 행하는 경찰관이 직면하는 피해자의 피해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신체적 상해와 같은 육체적 충격을 받은 현장을 볼 수가 있고, 심리적 쇼크나 피해망상증 등과 같은 정신적 충격 등이 목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경찰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지출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상처와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간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잊고 싶은 피해경험을 회고케 됨으로써 제 2차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범행사실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여전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수사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고충을 간과하기가 쉽다고 보인다.

범죄피해를 당한 자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9)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eds), *Ibid.*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행정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사에 종사하는 경찰관들도 범죄피해에 대한 양상을 좀 더 분명히 이해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1. 범죄피해 진행 단계

가. 1차 피해자화

1차 피해자화란 범죄나 불법행위 기타 개인 단체 집단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그 대상자인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육체적,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의 전개는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진행 못하도록 중단시키거나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나. 2차 피해자화

최초의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파생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제 2차 피해자화라고 할 때, 제 2차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제1차 피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일정한 조직구성원이나 집단구성원 전체가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을 검증하

10) 최초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당할 경우를 1차 피해자화라 할 때, 그 본래적 범죄의 여파로 인해 본래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는 물론, 본래의 범죄피해자 이외의 자가 그 범죄의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경우를 2차 피해자화 개념에 넣기로 한다.

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거나 피해자의 가옥에서 압수수색을 행하고 사체를 취급하기도 하는 바,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3차 피해자화

제 1차, 2차 피해자화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제 3의 파멸적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3차 피해자화로 되는 과정이다. 피해 전후에 반사회적, 비사회적 반응을 보이고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차 피해자화는 제 2차 피해자화와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대응을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¹⁾ 살인사건 현장검증을 할 경우 유족들이 감정에 복받쳐 범인을 공격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은 유족들의 동향에 유의하여 흥분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의해 3차적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범죄피해의 유형

가. 육체적 피해

범죄피해의 가장 전형적이고도 직접적인 형태는 육체에 대한 충격이다. 살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고통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유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의 문제가 더 부각될 것이고 상해나 폭행, 강도·강간죄 등의 경우에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육체적 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단, 육체적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관찰하거나 다루기가 더 용

11) 宮澤浩一, “피해자학 연구”, 장규원 (역), 수사연구, 1997년 7월호.

이한 면이 있다. 신속한 초동수사의 전개는 이러한 직접적인 육체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출하거나 보호해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최초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를 인질로 삼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전 보다 상황이 악화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 정신적 피해

범죄로 인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초래되는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충격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은 폭력, 상해범죄의 경우에 그 고통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정신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그 상처가 피해자의 몸에 남아 육체적 고통이 가신 이후에도 심리적 상처(Trauma)가 되어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신적 피해의 유형을 보면, ① 정신적 공황(Crisis), ②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혼란(Acute Stress Disorder), ③ 외상후의 스트레스성 혼란(Post-Traumatic Stress Disorder)¹²⁾, ④ 장기성 정신공황 반응(Long-Term Crisis Reaction), ⑤ 그 밖의 정신적 혼란 등이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강간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인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의 경우를 ① 급성혼란(Acute Stress Disorder) 단계, ② 표면적 적응(Apparent Readjustment) 단계, ③ 장기적 재조직(Long Term Reorganization)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급성혼란단계는 사건 직후부터 1-3주 동안에 불안과 공포가 극도로 증가하는 단계이며, 표면적 적응 단계는 증상이 호전된 듯 보이는 단계이고, 장기적 재조직 단계는 이전의 심각한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거나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인데 이 때 재통

12)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의 대표적 경우가 '심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약칭 PTSD)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정신의학회는 1980년 질병분류 체계에서 이 PTSD를 질병의 하나로 추가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도 '국제질병분류'의 제10호에 이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함에 실패하면 부정적 감정을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고 한다.¹³⁾

Eric Linderman은 인간정서의 건전성 및 인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공황(Crisis)을¹⁴⁾ 다른 학자로서 인간정신에 다가오는 충격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⁵⁾ 수사경찰은 수사에 임함에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공황과 충격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수사를 위한 면접이나 진술조서 작성시 조사시간이나 장소의 선택, 면접시 대응기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만 한다.

다. 경제적 피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하면, 무자력자인 범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노동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설사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범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는 등의 피해 회복 이외의 영역에서 비용지출이 있게 되고, 정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문가나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 휴직을 하게 되는 등 피해로 인한 비용지출은 지속성을 띠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13)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제8호), pp. 170-171.

14) 피해자학에 있어서의 공황은, 피해자가 범죄의 충격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을 따라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되어 있고 정서적 균형이 깨어진 일련의 일시적 상황을 말한다(Albert R. Roberts, Crisis Intervention as Psychotherapy (Oxford, New York, 1978).).

15) Albert R. Roberts & Sophia F. Dziegielewski, "Foundation Skills and Application of Crisis Intervention and Cognitive Therapy," The Phasos (Summer 1980), p. 15; E. Lindemann,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101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44, pp. 141-148.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단체, 국가 등이 이들을 원조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지출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 심지어 법집행기관 조차도 일정한 경제적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비용(Victim's Cost)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측에 발생된 모든 직간접의 비용을 의미하는 바, 범죄비용은 개인적 피해비용(Victim Costs of Individual)과 사회적 피해비용(Victim Costs of Society)으로 나뉜다.¹⁶⁾ 그런데 범죄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 가운데는 보험보상, 부상자 치료비, 피해자의 상실임금처럼量化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可視的 費用: tangible Losses), 공포·불안·상실된 삶의 질과 같이 양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非可視的 費用: intangible Losses). 가시적·비가시적 비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함으로 말미암아 비가시적 비용인 공포와 불안 등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잊은 출석요구를 통해 가시적 비용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경찰의 수사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

1. 초동수사 영역의 경우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수행 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사경찰의 대응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만족도 결정 변수로는 경찰대응의 신속성 여부(expectation of response time), 수사경찰의 의지와 노력정도(investigative effort), 경찰의 전문성(professionalism) 등이 피해자 만족도(victim satisfaction)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즉 초동수사에 임하는 경찰관의 전문성과 자세가 피

16) 이상안, 『범죄경제학』(서울: 박영사, 1999), p. 360.

해자인 시민들의 수사서비스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경찰이 초동수사 진행과정 중 피해자 보호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① 정확한 신고접수와 신속한 현장출동, ②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의 피해자의 구호조치, ③ 범인이 현장에 있을 때 피해자 구출 혹은 격리, ④ 현장보존 및 현장감식을 통한 범인 및 피해자 신원확인과 증거수집 등을 들 수 있다.

가.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범죄가 발생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정확하게 접수하고 범죄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구호하면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은 수사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외근활동을 하는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112 지령실이나 파출소 및 경찰서 상황실 등에 범죄발생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관할 파출소 근무자들과 수사형사들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신고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暗數犯罪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피해가 경미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 이미 화해가 되었다든지 하는 사례도 있으나 수사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수사에 임하는 경찰관의 사건처리 태도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2 신고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과 수사력 낭비 및 다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를 돋지 못

17)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19, pp. 109-115.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교육수준·성별·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은 범죄피해자의 만족도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체 112 신고 건수 총 339만건 중에서 약 22만건인 20.4%가 허위·오인신고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⁸⁾ 이러한 허위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적합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미국 미시간 대학의 Steven G. Brandl 와 Frank Horvath는 경찰관의 출동이 피해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빨랐을 때는 피해자 만족도가 100%였던 반면, 출동시간이 피해자 예상 시간과 같거나 느렸을 경우에는 각각 만족도가 63%, 22%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¹⁹⁾ 이것은 경찰이 무엇보다도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며 또한 경찰에 대한 신뢰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우리나라 경찰의 사건현장 출동시간을 보면, 총 출동건수 3,143,494건 중 3분이내에 도착한 건수가 2,005,148건으로서 약 63.8%에 이르렀고, 5분이내에 도착한 것은 약 92.8%에 이르러, 사건신고 접수 후 신속한 출동에 관한 한 가히 선진국 수준이라 할 만하다.²⁰⁾

그러나 일정한 준비없이 현장에 신속한 접근을 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기에 현장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임장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정관념에 따른 각종 오판에도 유념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 분석과 전략이 없으면 신속한 현장임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¹⁾

18) 경찰청, 경찰백서, 2001, p. 17.

19)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op. cit., p. 115.

20) 경찰청, 『경찰백서』, 2002, pp. 12-15. 미국은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친 조사결과 구조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6분 안에 현장에 임장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약 90%에 달했다고 한다(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시법체계”, 한국공안행정학회회보 제8호, p. 248).

21) 예컨대 임장 경찰관의 부상, 인질극의 발생, 피해자 살해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구호활동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생명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경찰법 제3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범죄수사규칙 제83조 등을 근거로 하는 당연한 수사경찰의 임무이다. 범인이 도주하여 추격해야 하는 경우라도 임무를 분담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를 해야 한다.²²⁾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구체적인 사건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및 제반 정황에 관해 질문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관의 입장에만 서지 말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수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²³⁾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현장에서 응급조치²⁴⁾를 취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자를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거나 의료기관에 수용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²⁵⁾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강구를 해주어야 한다.²⁶⁾

범죄현장에 부상당한 피해자를 구호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손상되거나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들이나 이웃 주민, 그리고 119 대원들에 의한 구호과정 및 응급복구 과정에서의 현장훼손은 수사력 낭비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²⁷⁾ 이로 인한 범인검거 및 사실규명

22) 범죄수사규칙 제83조

23) 범죄수사규칙 제10조

24)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폭력행위의 제지와 함께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에 후송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26) 피해여성이나 아동을 위해 긴급전화 안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피해 여성의 사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 「1366」은 여성부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특수전화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등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실시해주고 있다(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p. 83.). 피해자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긴급전화인 「1391」를 이용 할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운영하는 특수전화로서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추고 있고, 상담 후 아동을 전문보호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 2003. 2.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약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의 유해·유류품 수습작업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현장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하철 내부 청소를 진

의 지체는 곧 피해회복의 지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다. 범죄가 진행중인 현장에서의 피해자 구출

최근에는 절도나 단순강도가 인질강도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검거 과정에서 인질범을 효과적으로 분리시켜 검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보호에 있어 취약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근래의 인질강도 사건의 발생추세를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이 연평균 74.4%라고 한다.²⁸⁾ 최근에는 히로뽕 등 마약 중독자나 정신병자, 경제파탄이나 인간관계파탄에 의한 우발적 인질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인다.²⁹⁾ 미국 CIA에서는 인질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人質協商팀을 구성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협상팀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음 현장에 임하는 수사관이 현장상황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교육훈련이 우선 요청된다고 보인다.

한편,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격리·체포 함으로써 지속적·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家庭暴力犯罪(domestic Violence)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 폭행이나 아동학대의 경우인데 이 중에서 경찰에 대한 보호요청과 관련하여 미묘한 입장에 있는 것이 배우자 폭행에 의한 가정폭력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행하여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몰각한 처사였다고 비판적 보도를 하였다.

28) 2000년 한 해 동안 인질강도 사건은 총 73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74명이 검거되었고, 약취유인 사범은 352건이 발생해서 368명이 검거되었다(경찰청, 『인질범죄 대응요령』(경찰청수사국, 2001), p. 5).

29) 경찰청, 상계서, p. 3-6.

제5487호)³⁰⁾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5436호)³¹⁾을 제정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제지·격리조치, 관련보호시설에 인도, 임시조치신청 권고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이론과 관련된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시민들의 사적인 영역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은 순수한 가정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결혼과 가정문제에 관한 전문적 간행물에서조차 1971년 까지 배우자 폭행문제를 다루지 않았었다.³²⁾ 이후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 보호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많은 경찰기관은 가정폭력에 따른 신고를 받게 되면 출동 및 개입에 신중을 기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의 체포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적 가정폭력을 경미한 범죄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거나 수사를 중단해주기를 바라는 사례도 있었다.³³⁾

30)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과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의 근거가 제시되었다.

31) 이 법에서는 진행중인 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제지, 범죄수사, 보호시설에의 인도,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2) 미국의 가정문제에 관한 간행물인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등에서는 1971년 까지 공식적으로 이러한 배우자 폭행을 다루지 않아왔으나 1970년대 중반에 페미니스트 그룹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피해자보호대책을 주창하고 입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Harvey Wallace, *Victimolog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998), p.157.; John E. O'Brien, "Women Abuse: Facts Replacing Myths," 33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362-398).

33) 2000년도에,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해자인 부인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한 남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폭행을 행한 범죄자의 재범율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부터의 가해자 격리나 배우자간 상호화해·권고 등도 아닌 피의자 체포(최소한 1일 이상의 감금)였다고 한다.³⁴⁾ 가정폭력 사건에의 경찰 개입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자의 체포가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주들이 배우자를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없는 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을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⁵⁾ 이것은 곧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의 즉각적 대응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경우도 경찰관이 신속히 개입하여야 할 일종의 위기상황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 평소의 위기개입훈련을 통하여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 현장 임장 시 제반 권리 고지 및 정보제공

가해자 곧 범죄자를 경찰이 구속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 제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하도록 하고, 범죄자 가족에게 일정사항을 통지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2조, 제87조).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현장에 입장하였을 때 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 현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향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는 의무규정이 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³⁶⁾

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거칠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34) the Police Foundation and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 의 조사에 의하면 체포되었던 가정폭력 피의자의 재범율은 10%였던 반면,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피의자의 재범율은 24%, 그리고 화해가 권고된 피의자의 재범율은 19%였다고 한다(Harvey Wallace, Ibid. p. 160).

35) Harvey Wallace, Ibid., p. 157.

일반적 경찰작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이 존재함을 이유로, 범죄의 피해자(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서에 임의동행 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일정 사항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 명시적 의무 규정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주로 거동수상자나 비협조적인 참고인에 대해서 임의동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히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피해자 보호활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참고인(피해자)을 임의동행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근거로 한 임의수사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는 바, 이 견해에서는 임의수사상 임의동행과 불심검문상의 임의동행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를 둔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피고소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 불기소 · 공소취소 · 타관송치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고소인에게 이러한 처분사항을 검사가 통지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형사소송법 제 258조 제1항) 이 것은 수사가 종결된 이후 검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서, 초동수사시 사건 현장에 임장한 경우라든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경찰이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상황 · 피의자 검거여부 ·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경찰의 수사실무에 있어서는 고소사건 처리가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으면서³⁶⁾ 민원인들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중간통지를 하는 예가 있지만, 이 또한 경찰청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 통지 내용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3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제4호

37)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는 일정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 신청권을 규정해놓고 있기는 하지만³⁸⁾ 피해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권리를 사건수사의 초기나 수사진행시에 피해자에게 고지를 해주도록 하는 절차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³⁹⁾

마. 현장감식활동의 전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범죄사건의 신속한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사건 해결의 시발점은 범죄현장의 관리로부터 시작된다. 초동수사 현장에서 시민이나 피해자가족, 심지어 출동한 형사나 파출소 직원에 의해서 현장이 파괴되는가 하면 꼭 필요한 증거를 수집을 제때에 하지 못함으로써 중요한 증거를 멀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초동수사요원에 대한 범죄현장보존요령, 증거물 수집·채취요령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과학적 채증이나 기초적 감식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⁴⁰⁾

2. 임의수사 영역 중 피해자 조사의 경우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범인검거를 위해서는 피해자, 범행목격자, 사건관계자

38)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39)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에는 수사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비밀엄수의무를 별칙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현장임장시에 담보할 만한 장치가 충분치 못하다.

40) 전국 235개소의 전담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증거수집키트를 비치하고 있음으로 초동수사요원은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증거물수집 과정에서 증거물이 증거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병예방검사, 임신반응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진단서를 발급 받는 때에 성폭력상담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점 등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경찰청, 전계서, p. 86).

기타의 참고인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건직후에 그들의 진술을 청취해두는 것이 또한 요청된다. 범죄통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종래의 수사활동은 피해자를 범인검거에 협조하는 객체로만 인식하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소위 '2차 피해자화' 사례를 많이 발생시켰다. 그러나 오늘날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사방법의 선택·조사시간과 장소의 결정 등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현재의 심리적·신체적 상황 등을 고려해주어야 하고,⁴¹⁾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등 담당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방법이나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질문방법, 수사의 효율성만을 의식한 채 단 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고자 면접을 강행하는 수사관의 태도 등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제2 피해자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만한 언행은 절대 금하여야 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다.⁴²⁾

3. 강제수사 영역 중 압수수색의 경우

피해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도 범죄의 증거물로 될 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강도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서 범인이 유류한 증거물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할 수가 있고, 절도 피

41) 경찰은 현재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생업에 차질이 있는 자에 대하여 E-mail이나 Fax, 우편조사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非對面 搜查 技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건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물건이 증거물로 압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수사경찰은 수사상 목적만을 의식한 채 압수수색이 끝난 후 현장 정리도 하지 않고 철수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수사경찰관의 행동요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압수물의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고,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가환부하여야 하는데,⁴³⁾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통지는 압수가 행해진 다음 상당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에 이러한 가환부 신청권 등을 고지해주는 제도의 마련이 요망된다.

V. 범죄피해자를 위한 수사경찰 행태변화 전략

1. 수사경찰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조건

가. 피해자 보호실적의 근무성적에의 반영

경찰청 수사요원과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의 형사, 조사요원에 대한 일상 업무처리 실적산정은⁴⁴⁾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경찰청 예규 제61호)이 규정한 바에 의한다. 동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 형사요원·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형사·조사요

43)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34조

44) 경찰인사고과평가제시행규정 제5조 제8항

원의 업무처리 실적은 대부분 범인검거(본범)실적을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구속의 경우에 5점이나(경찰서) 10점(경찰청)을, 불구속의 경우에는 2점(경찰서)이나 5점(경찰청)을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수를 종합하여 고과평점 성적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 보직이나 포상의 기초로 삼는다든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⁴⁵⁾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실적이 수사(형사)요원의 기본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경찰관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것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위 규칙에서 장물회수가 될 경우 특별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⁴⁶⁾ 이 경우도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의 부산물일 뿐, 범죄현장 및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서비스를 유발하기 위한 내용이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의 실적평가 항목에 피해자 지원안내, 상담시설연결, 피해자구호, 피해자구출 등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보호대책실 운영⁴⁷⁾

일본의 경우 1996년 5월에 경찰청장관 관방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고, 뒤이어 각 도도부현 경찰에도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각급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대책반을 각각 두고 피해자보호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범죄피해자 대책을 경찰이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무부 사법제도실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 OVC)이 설치되어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of Assistance :

45)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 제11조(경찰청 예규 제61호)

46)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 제5조의 2(형사요원의 특별득점). 예를 들면 강도, 절도,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품이 회수되면, '본범득점×장물회수율×2배=특별득점'의 산출공식에 의해 특별점수를 부여한다.

47)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pp. 126-137.

NOVA)와 같은 피해자 지원 목적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많은 주경찰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경찰내부에서의 피해자 처우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4년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 : VS)를 창설하였는데 이 단체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상담이나 법적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조언을 행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내무성(Home Office) 형사국 산하에 사법제도 및 피해자반(Justice and Victims Unit)을 두고 피해자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경찰이 피해자보호 대책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수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피해자보호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모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경찰청 경무국(지방경찰청 경무부, 경무과) 산하에 피해자보호대책실을 두되, 총괄조정관에는 경찰청 경무국장(지방경찰청은 경무부장·경무과장)을 임명하여 수사·방범·교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보호 관련업무를 조정·지도·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각 급 경찰서 단위에도 경무과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는 피해자종합대책반을 두되 이 또한 기능간 중복되는 사항만을 조정해주거나 각 기능에서 다루기에 부적합 사항만을 다루도록 하고, 그 외에는 수사·형사·교통·방범 등 각 기능별로 피해자보호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다.

다. 피해자의 권리고지 및 정보제공 규정 명문화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자지원 정보에 관해서는 수사경찰이 현장에 입장할 당시에 이를 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정절차의 보장이 필요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의 절차적 보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현장입장시에는 배상명

령절차·범죄피해자구조제도·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원호기관 등을, 그리고 수사진행시에는 수사절차의 진행경과·피의자 검거여부·피의자의 기소여부·피의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규정을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의 고지 및 정보제공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⁴⁸⁾ 우리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하여 항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있지만 그 외에는 가해자 정보를 비롯한 제반 정보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식적인 합의절차도 인정되지 않는 까닭에 수사경찰이 임의로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의자 측에서는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⁴⁹⁾

사건 현장에서 혹은 수사진행 중에 피해회복에 도움이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적절한 정보들은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친 뒤 기울이는 막대한 노력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⁵⁰⁾ 또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에 당황하

48)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각 도도부현 경찰에 대하여 피해자연락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 교통사망사고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상황·피의자검거여부·피의자 성명·주소·연령과 피의자의 처분상황·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명칭·기소된 법원·기소 및 불기소 여부 등을 통지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형사절차개요, 손해배상청 구제도, 범죄피해자급부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주게끔 하고 있다(新屋達之, “刑事手續における情報提供”, 法律時報 VOL.71, NO.10.(1999. 9), p. 24). 독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는 제406조 d(소송결과의 통지), 제406조 e(기록열람), 제406조 f(소송절차에서의 변호사의 대리), 제406조 g(소 제기 이전의 변호사의 대리)에 의한 권한 및 이미 제기된 공소에 공동원고로서 참가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중대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및 그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고지 및 형사절차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다(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학 연구(제8호), p. 115).

49)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혹은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면 이미 경찰과 피해자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항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경찰이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개 법령에는 피해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이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 등을 문서로써 혹은 구두로써 분명히 고지해야하는 의무규정 두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그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제반 권리를 고지해야 하고⁵¹⁾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관내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알려주어 일정한 도움을 받도록 하면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피해자의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도 그 물건이 증거에만 제공될 목적으로 압수되었고,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가환부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⁵²⁾ 압수수색 당시에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명시적 규정을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경황이 없고 당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반 제도적 장치와 권리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해주는 책자의 배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0)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eds), op. cit., pp. 46-47.

51) 예를 들면 일정한 경우 범죄의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등을 받을 수 있고,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다는(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2) 권리 등을 말한다.

52) 형사소송법 제133조

2. 수사경찰의 행태변화 전략

가. 범행현장 대응훈련

1) Call Screen System 운용

먼저 장난전화나 허위전화를 통한 잘못된 신고를 가능한 한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Call Screen System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은 허위신고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⁵³⁾ 하고, '112신고자 전화번호위치 자동표시장치'를 지방청 지령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상황실 및 각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접수의 단계에서 Call Screen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접수체계를 보다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과, 신고의 진실성을 분석해내는 직원을 각각 따로 두고서 이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서로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면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⁵⁴⁾ 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 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지령을 내리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현장상황과 가해자에 관한 부수적 정보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⁵⁾

5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 형법 제156조(무고)

54) 통상적으로 최초 출동명령은 파출소에 소속된 순찰차 근무자에게 하달되어 현장대응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상황실이나 파출소에서 신고의 진실성을 분석하는 부분은 현재 미진한 감이 있다. 따라서, 최초 신고접수자는 신속·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수사부서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해당 신고내용과 신고자 인적사항을 채빨리 전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5) 가해자의 흡기소지여부, 음주 및 약물복용여부, 공범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2) 현장 접근방법 훈련

현장에 출동하는 요원은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유형별로 현장 대응훈련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경찰차량이 경광등과 경적을 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복경찰관보다는 사복경찰관이 자가용으로 은밀하게 출동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사안별로 합당한 출동방법을 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출동방식은 범죄피해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시민들에게 제2차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3) 행태적 오류 극복을 위한 사전 교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고정관념에 의해 범할 수 있는 행태적 오류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출동하는 경찰관의 전형적 고정관념(Stereotyping)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범인 검거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상황을 바로 단절 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身體的(physical), 行爲的(actional), 狀況的(situational) 固定觀念 등이 그것이다.⁵⁶⁾ 행위적 고정관념(actional Stereotyping)에 관한 예에 따르면 출동하는 경찰관은 통상 범죄현장에서 급히 뛰어나오거나 도망하는 자는 모두 범인이라고 보기 쉬워서 이 때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어느 경찰서에서, 편의점 강도로 검거된 자가 자백하였던 내용에 따르면 과거 강도 범행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서두르지 않고 평범한 태도로 유유히 걸어 나가자 전혀 자신을 검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사례에서는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도망하자 범인으로 알고 발포하였는데 이들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나 범죄피해자였다는 것이다.⁵⁷⁾ 이와 같이 신고를 받고

56) Charles R. Swanson, Neil C. Chamehn and Leonard Territo, Criminal Investigation (Mc Graw Hill, 2000), pp. 377-378.

출동한 경찰관이 이러한 전형적 선입견 때문에 범인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악화되거나 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지방경찰청 소속 파출소 직원이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각목을 들고 있었던 한 시민을 범인으로 잘못알고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⁸⁾

4) '위기개입훈련(Crisis Intervention Training)'의 실시

범죄현장에 도착하였지만 범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기상황으로 보아 사전 위기관리 및 위기개입 훈련을 통하여 치밀하게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수사경찰관은 범인과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범인을 자극하면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인질극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만일 안에 있는 범인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부 수사관들은 방안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적합한 실력행사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 만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진입을 시도하되⁵⁹⁾ 이 때는 수사관의 안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방화사건 현장, 폭발사고 현장, 가정폭력 현장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유형별로 각각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나리오를 미리 구성해 놓고 이를 토대로 수사경찰을 비롯한 전 외근경찰관들에게 '위기관리기법(the Techniques of Crisis Management)' 내지는 '위기개입훈련(Crisis Intervention Training)'을

57) Charles R. Swanson, Neil C. Chamelin and Leonard Territo, Ibid.

58)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총격", 인터넷 경향신문, 2002. 11. 4.

59) 강제력을 행사하여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제7조 등이 제시된다.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훈련은 신임경찰관 교육을 할 때는 물론이고 지방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사직무교육의 경우나 경찰수사간부연수소에서의 전문교육 등 모든 경찰교육기관에서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임장시 피해자 면접기법 훈련

어떤 유형의 사건현장에 임장을 하건,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범인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획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⁶⁰⁾ 따라서 신임 경찰관이나 재직하고 있는 경찰관의 보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건 현장 임장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화법 구사 훈련’이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훈련’을 충분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사건 초기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수사관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작은 배려와 친절한 행동이, 수사전문가의 직업근성을 가지고 범인을 신속히 추적해 들어가는 것보다 심리적 충격의 상쇄라는 측면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유관기관과의 협동 훈련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 현장에는 수사경찰관만이 항상 먼저 출동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피해자 가족이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는가 하면, 소방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조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구호조치를 할 때는 현장을 훼손하기가 쉽다. 따라서 최소한 의료관계자나 긴급구호관서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조치 요령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시에 상호간에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Hot-Line을 개설하는 등 평상시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60)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eds), op. cit. pp. 46-47.

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에 경찰서·소방관서·의료기관 등 각 기관별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 구호시 현장보존 요령·응급복구시 수사상 유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교육 및 공동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신변보호요청시의 대응요령 교육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던 가해자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운운하며 협박해올 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경찰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신변보호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법률 제5997호)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특정범죄⁶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특정범죄, 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단체구성원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장, 검사, 경찰서장, 범죄신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요청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일정기간 경찰관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정기간의 신변보호활동을 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⁶²⁾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가 보복 목적으로 다시 폭행,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후적 규정만 명시화 되어 있을 뿐이다(동법 제5조의 9 제2항). 따라서 목전에 위해가 급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는 처지에 있는 가정 폭력의 잠재적인 피해자는 신변보호요청 청구권이 없어 취약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다. 경찰청 훈령 제269호인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을⁶³⁾ 위 특정범

61)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수강간, 강도 등의 범죄 등을 말한다.

6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협발생방지조치 조항을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겠으나 이 조항은 위험한 사태의 긴급성과 급박성 등이 요건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나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로 원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인다.

63)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제3조에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도는 범죄신고

죄신고자보호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이는 행정규칙의 일종인 훈령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방식도 羈束規程이 아닌 裁量規程 형태로 되어 있어⁶⁴⁾ 신고자인 피해자를 사전에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⁶⁵⁾

경찰은 장차 발생이 예상되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상당기간 신변보호활동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부분 가정폭력 발생 직후에 경찰이 개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 신변보호 요청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예를 들어 과거에 신체적 상해를 입힌 자가 재범이나 누범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는 신변보호청구권을 법에 명시하여 경찰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과 동시에 협박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기준의 협박행위에 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64)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빙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 훈령 제3조).

65) 어떤 시민이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권발동을 요청할 경우 이때 경찰권 발동여부에 관한 재량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화 되어(이를 경찰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라고 설명한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찰권이 발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는 재량권행사의 부적법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구제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사전적 구제 내지는 사전 보호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개별적 법규정이 미비한 현재의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를 경찰권발동의 일반조항(Generalklausel) 내지는 일반적 수권조항(Generalmächtigung)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게 될 경우, 경찰은 과거피해의 심각성, 범죄자의 폭력성, 위해의 급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 바로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동법 동조항을 근거로 하여 그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신변보호 요청에 일단 성실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 파출소의 치안수요 때문에 장기적인 신변보호조치는 어려울 것이므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박범죄 수사차원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보다 용이하리라 본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채증활동을 진행한 후에⁶⁶⁾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범의를 좌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사망사실 통지방법 훈련⁶⁷⁾

수사를 행하는 경찰관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경찰의 사망사실 통지행위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영원히 그 순간의 정황이 기억속에 남게된다. 따라서 수사경찰관은 어떤 어법과 문장을 사용하여 어떤 태도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미리 연구하여 연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망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대원칙들을 열거해보면,

「① 사망자의 신원이 정확해야 한다. ② 전화를 하지 말고 유족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③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을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 ⑤ 유족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앉는다. ⑥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사망사실을 알린다. ⑦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한다. ⑧ 문서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⑨ 사망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교통수단을 제공해준다.」 등이 있다.

한편, 유족들을 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화기법의 예를 들면,

「① “정말 안됐습니다.” ②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만큼 많이 힘드시죠?” ③ “이전에 이런 일을 겪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당신처럼 이렇게 힘들어 했답니다.” ④ “저에게 하실 말씀이나 물어볼 내용은 없으시나요?” ⑤ “당신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더 있는지 제가 내일 다시 연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66)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협박내용을 녹음한다든지, 협박문서를 확보하는 등 증거수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67)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New Jersey : Prentice Hall), 2002. pp. 30-31.

수사경찰관의 사망통지와 관련된 행위들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아픔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들에 대한 훈계형 어법은⁶⁸⁾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 되도록 피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담을 수 있는 용어나 어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피해자 조사 및 면접기법 훈련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調査의 速度와 調査場所 및 調査時期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를 동반시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⁶⁹⁾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있어서 피해청소년이나 아동을 조사하는 때에도 부모의 양육방법을 비판한다든지 아이에게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조사태도는 금해야 한다. 또 아이에게 “그 아저씨가 네 옷을 벗겼지?”라는 형태의 暗示性 質問은 조서의 객관성과 임의성을 떨어뜨리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아동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더라도 아동심리학자나 의사의 소견을 들어 함부로 무혐의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⁷⁰⁾ 그리고 강간행위에서 옷을 벗기는 과정을 기술하게 하거나 이미 강간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가해자의 사정여부를 관례처럼 묻거나, 성기 삽입과 관련하여 행위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게 하는 등의 것들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의심케하고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은 지양해야 한다.⁷¹⁾

68) 상대방을 훈계하는 식의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겁니다.”, “당신이라도 계속 살아야 해요”, “당신의 인생에서 멋있었던 장면에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 사실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최소한 나머지 자녀들은 살아 있잖아요?”

69)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2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을 때 신청을 통하여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다.

70) 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pp. 94-103.

71)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의 잘못된 문답방식의 예를 들면, “늦은 밤에 남자하고 단둘이서 술

수사경찰관은 또한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담해본 뒤 필요하면 치료를 행한 상담소나 병원에 진출하여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미리 분석해보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반복적 조사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참고인을 소환할 경우에도 조사시간을 가급적이면 예약하도록 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잣은 소환조사와 장시간의 대기도 2차적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당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다.⁷²⁾

다. 압수수색 행태 등의 개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행하거나 현장감식을 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압수수색을 종료하거나 증거수집을 완료하였을 경우 현장을 잘 정리하여 원래대로 복구를 해 주어야 하며 협조해준데 따른 감사의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때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의 집에서 행하는 압수수색 현장에 가급적 피해자를 입회시키도록 하라는 것과, 만일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설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과장된 설명을 하거나 착각 속에 진술할 수도 있으므로 그 진술을 맹신하여 우를 범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점이다.⁷³⁾ 또 범죄의 증거물로서 압수된 장물은 피해자로부터 환부나 가환부 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환부(가환부) 조치를 해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피해자

을 마시고 같이 지냈다면 당신도 은근히 원했던 것 아니냐?", "이 정도로는 구속사안이 안되니 창피만 당하지 말고 서로 적당히 화해하는 것이 좋을 건데...", "성폭행을 당할 때 쾌감은 느꼈느냐?", "성행위를 하고나서 기분이 어떠했나?" 등과 같은 발언이 있을 수 있다.

72) 정현미, 전계서, p. 175.

73) 加藤克佳, "刑事手續において保護求める被害者の権利", 法律時報, Vol. 71. NO. 10 (1999. 9.), p. 31.

가 갖는 가환부 신청권이라든가 자신의 물품을 환부받을 수 있는 법규정 존재에 관하여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고, 만일 환부나 가환부가 지연될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 또한 고지해주어 피해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수사경찰의 행태적 문제점들은 본질적으로 그 나라의 법률제도적 환경과 대다수 경찰관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범인검거실적으로 수사경찰의 업적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근무평정제도, 피해자보호대책실과 같은 전담기구의 부재,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나 권리고지제도와 같은 입법의 불비,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인간에 대한 배려보다는 수사의 능률성에 무게를 두는 조직분위기 등과 같은 것들이 수사경찰관의 행동방식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수사경찰관의 행태변화 전략도 이러한 법률제도적·조직문화적 환경의 개선과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수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태변화 전략의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는 바로 철저한 ‘사전 교육훈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전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 초동수사단계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현장대응훈련’ 혹은 ‘위기개입훈련’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적 차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대형 화재나 폭발사고 현장, 인질강도사건 현장, 가정폭력사건 현장 등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며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요청 등에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家庭暴力은 私的 領域이라 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과잉대응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법집행관으로서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때는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는 심정으로 적절한 태도와 어법을 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적 차원의 임의수사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출석요구방법의 개선, 면접기법의 개발, 피해자 조사방법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는 바, 특히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경을 최대한 배려하는 면접기법을 구사함으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조사시기의 설정·질문방식·조사장소의 선정·상대방에 대한 존중의식·질문내용의 적절한 선택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적 조치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回復的 司法’이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의 형사사법행정은 종래의 가해자(피의자)에게 초점을 맞춘 ‘法執行中心的 司法行政(Legalistic Style)’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奉仕的 司法行政(Service Style)’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前者의 성격이 강했던 경찰의 수사활동도 이제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의 수사서비스 개념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⁷⁴⁾ 수사에 임하는 모든 경찰관은 이러한 현대 형사사법 조류의 큰 흐름을 인식하고서 모든 수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정신이 수사업무 수행시에 바람직한 행태가 되어 나타나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태, 범죄피해자, 수사경찰

74) Michael, D. Lyman, Criminal Investigation (Prentice Hall, 1999), p. 15.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경찰대학. 『피해자학』. 2001.
-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2002.
-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2002.
- 경찰청. 『경찰백서』. 2002.
- 경찰청.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 경찰청. 『인질범죄 대응요령』. 2001.
- 김종률. 『수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6.
- 이상안. 『범죄경제학』. 서울: 박영사, 1999.
-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9.
- 김용세 외.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제10권 제1호)

김용세. “일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보호시책”. 2001.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제8호)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한국공안행정학회회보 (제8호)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학 연구(제8호)

(외국문헌)

加藤克佳. “刑事手續において保護求める被害者の権利”. 法律時報, Vol. 71. NO. 10, 1999. 9.

Albert R. Roberts & Sophia F. Dziegielewski. *Foundation Skills and Application of Crisis Intervention and Cognitive Therapy*. The Phasos, 1980.

Albert R. Roberts. *Crisis Intervention as Psychotherapy*. Oxford, New

York, 1978.

Berglas, S. "Why did this happen to me?", National Organis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1985. <http://www.try-nova.org/>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 19. 1999.

Champion, D. *The Roxbury dictionary of criminal justice*. LA : Rexbury, 1997.

E. Lindemann.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101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44.

Harvey Wallace. *Victimol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998.

Laura J. Moriarty. *Policing and Victims*. New Jersey : Prectice Hall, 2002.

Michael, D. Lyman. *Criminal Investigation*. Prentice Hall, 1999.

Charles R. Swanson, Neil C. Charnelin and Leonard Territo. *Criminal Investigation*. Mc Graw Hill, 2000.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19. 1991.

Improvement Strategies o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s' Behavioral Patterns for Crime Victim Protection

Kim, Jae Min

The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system , what is called ' Restorative Justice System', lays great emphasis on the practical assistance for the victim's restoration. It focuses on the policing of service style to assist the crime victim's need rather than the policing of legalistic style which is related with crime control over suspects and defendants. So,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should have a great concern for the service style which gives useful aids to victim.

The improvement strategies on effective victim protec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ethods ; legalistic method, cultural method and behavioral patterns method. It is essential for the investigating officer to use the behavioral patterns method to satisfy crime victims. However, even if the behavioral patterns method is adopted, other methods must be kept pace with the behavioral patterns method to protect the victim more effectively and faithfu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police officer's behavioral patterns toward victim is proactive training and education activities to cultivate the police officer's proper attitude.

In the stag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should be capable of making a reasonably speedy response to the crime scene. In addition, to respond safely and speedily to service calls, they have to get the crisis-intervention training in advance. Furthermore, they should not only demand victims to appear in a reasonable manner but also develop interview techniques in the area of voluntary investigation activity.

Above all, those who investigate the sexual assault cases should make an effort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zation when they interview and come in contact with victims. Every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should recognize the latest trend of the criminal justice which is taking a new turn toward the 'Restorative Justice', and have always the victim-oriented attitude to help victims who are in confusion or psychological crisis resulted from criminal attacks.

Key word : behavioral patterns - crime victims - investigating police officer